

한문 문헌에 대한 교감의 전통과 그 유형에 관하여

—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

신 영 주**

<目次>

- | | |
|----------------------|--------------------|
| I. 문제제기 | III. 교감의 범주와 개별 유형 |
| II. 한문 문헌에 대한 교감의 전통 | IV. 맺음말 |

<국문 초록>

인문 학술에서 교감은 매우 중요하다. 장구한 역사적 경험과 지식이 결집되어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것이 고전인데,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감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감은 고전 정리의 기본이요 학술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기도 하다. 최근 고전 정리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어 이에 대한 방법론적 성찰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감의 전통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먼저 우리가 이미 유무형의 자산으로 상속받은 교감의 오랜 전통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교감의 실무적 범주와 그 개별 유형을 알아보았다.

【주제어】 校勘, 凡例, 定本, 朱子書節要, 類義評例, 純宗大王實錄儀軌

* 이 논문은 2008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전임강사 / zuowang@hanmail.net

본고는 한문고전번역 핵심인재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3월 15일에 한국고전번역원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이 공동 주최한 ‘교감의 제문제’란 주제의 학술집담회에서 발표했던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

I. 문제제기

고전을 정리하는 일은 우리에게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국가 지식의 총체를 되살리고 학문 토대를 단단히 하는 일이 고전 정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지식의 축적 없는 인문의 발전이란 가능하지 못하는데, 장구한 역사적 경험과 지식이 결집된 총체로서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것이 고전이다. 하지만 20세기 초반의 역사 전환기에 전통과의 격절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경험한 이후로 이 모순을 상쇄시킬 만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한 세기를 지내고 말았다. 이런 까닭에 전통의 핵심인 고전이 현재적 힘을 잃고 진부한 것으로까지 여겨지는 수모를 겪기도 한다. 이제라도 서둘러 다시 고전을 뒤적거리고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전을 정리하는 일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절실한 과제인데 이를 논하자면 먼저 교감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감은 고전 정리의 기본일 뿐 아니라 학술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기도 하다. 튼실한 성곽을 건축하고 경건한 석탑을 쌓아올리기 위해 석재를 쪼고 다듬어 재단하듯이 교감도 인문 학술의 출발선에서 선행 과제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또한 그 자체로서 목표가 되기도 한다. 전통 시대의 인문 학술이 여전히 그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독스럽게 교감의 전통을 고수해온 선인들의 진지함 덕이다.

최근 고전 정리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방법론적 성찰도 필요하게 되었다. 교감 전통의 발전적 계승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논해보기로 한다. 먼저 우리가 이미 유무형의 자산으로 상속받은 교감의 오랜 전통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교감의 실무적 범주와 그 개별 유형에 관해 알아본다.

II. 한문 문헌에 대한 교감의 전통

정본화 작업은 궁극적으로 고문헌을 정리 가공하고 수정 보완하는 등의 일을 통괄 수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중요한 고전적 한 종의 정본을 작성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말은 틀리지 않다. 이 정본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이 곧 교감이다. 교감이란 대상 문헌에 대한 기본 대본과 대조 대본을 확정된 뒤에 상호 대조와 고증을 거쳐 그 안에 존재하는 오탈자 혹은 내용 형식상의 오류를 조사하고 확인 가능한 수준에서 시정의 당위성을 지적하거나 최선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교감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표점과 주석을 확정할 수 있으며 완성도 높은 최상의 번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충실한 번역을 위해서는 교감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렇지만 교감이 꼭 번역을 목표로 선행되는 것은 아니다. 교감은 번역과 근본적으로는 다른 범주의 일로 그 자체로서 독립된 작업일 수 있다. 다만 번역을 위해 반드시 교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리지 않다. 최근 들어 국역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되는 ‘학술번역’도 사실은 교감을 시작으로 표점과 주석까지 아우른 정본이 완성된 뒤야 실현할 수 있다. 번역의 입장에서 보면, 교감은 번역 대본을 확정하는 일이고 표점 가공은 본문의 의미 맥락을 이해하는 시각을 1차로 확정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현재 수행되고 있는 고전적 정리 사업에서 교감과 표점을 아우른 정본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전통 시대의 학인들에게 교감은 중요한 문제였다. 대개 통행본의 오류를 바로잡아 오탈자로 인해 실추된 경서의 권위를 회복함으로써 교화에 이바지하고자 하거나, 국가의 전장제도에 대한 법조문의 유권해석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꼼꼼한

교감이 행해졌다. 또한 『고려사』와 같은 관찬 사서를 편찬하고 열조의 실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교감이 이루어졌다. 특히 선현들의 여러 저술을 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재삼 거듭하여 교감이 이루어졌다. 다만 빈틈없는 교감이란 아마도 불가능하였던 모양이다. 이규경은 『패문운부』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아래와 같이 탄식한 바 있다.

무릇 제왕의 힘으로 천하의 서적을 수집하여 당세의 박학한 인재로 하여금 거질의 책을 모아 엮도록 했음에도 이런 착오가 발생하니 編纂과 校讐를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고인이 서적 교감하는 일을 티끌 쓸고 낙엽 쓰는 일에 비유한 것은 지극히 합당한 말이다.¹⁾

사실 진선진미한 완벽한 교감이란 존재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선인들은 가능한 범위에서 지혜와 힘을 다하고자 했다. 글자 한자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지은이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경석의』를 교감하라는 왕명을 받들었던 송시열은 ‘글자 한 자가 분명치 못해서 빗어지는 화가 크다.’는 주희의 말을 들어가며 교감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²⁾

교감 활동은 소박한 수준이나마 문자 기록이 생겨난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었다. 기록자의 착각이나 전사자의 오류 따위는 기록이 있는 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교감이 독립된 행위로서 그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은 훨씬 이후이다. 중국의 경우는 한대에 훈고학이 만들어져 자구의 시원과 전거를 밝히는 일이 과제로 등장하였다. 중요한 전적의 경우 이미 여러 이본들이 등장하였고 곳곳에서 오류들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해결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여러

1)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經史雜類·其他典籍·佩文韻府所漏辨證說」 “夫以帝王之力, 收天下之書, 命當世淹博之才, 滙作鉅帙之書, 而有此紕漏. 編纂校讐, 豈可以容易道哉. 古人以校書, 比掃塵掃葉者, 切當之辭也.”

2) 宋時烈, 『宋子大全』 卷17, 「進心經釋疑劄[辛酉九月]」 “伏以臣猥受明命, 俾校心經釋疑. 雖是小事, 所係則大. 朱子嘗言一字不明之禍大矣.”

주석가들이 나타나 자구의 의미를 확정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일을 주도하면서 훈고학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이후 북송의 鄭樵(1104-1162)는 『통지』를 편찬하면서 「校讎略」이라는 조목을 따로 두었다. 인쇄술의 발달로 서적이 증가하고 이본이 속출하면서 판본의 선후와 진위를 가리는 문제가 중요해지던 시기이다. 이제 교감을 독립된 하나의 학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청대에 이르면 교감은 훈고학, 음운학, 금석학 등과 더불어 고증학의 한 분과로서 통합 발전하게 된다. 이런 정황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의 국내 학인들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교수의 학문이 이미 뱃길이 끊어진 항구처럼 적막하다가 鄭漁仲이 『통지』의 諸略 가운데 따로 ‘校讎略’을 만들어 놓았으니 특별히 안목을 갖춘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명 이후로 더는 이 학문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겨우 근래에 와서야 錢竹汀과 王禮堂 같은 이들이 나타났으니 모두 이에 걸출한 자들입니다. 盧學士와 王高郵의 서적도 역시 우리나라에 전해졌는데, 특히 『십삼경 교감기』는 또한 집대성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경서를 읽으려 한다면 이를 버리고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³⁾

완당 김정희(1786-1856)의 말이다. 정초가 교수의 학문을 개창한 이후로 한 동안 발전적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정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걸출한 자들이 나타났다고 한다. 錢竹汀은 『二十二史考異』를 엮은 錢大昕(1728-1804)이고, 王禮堂은 『十七史商榷』을 엮은 王鳴盛(1722-1797)이고, 盧學士는 『儀禮注疏詳校』를 엮은 盧文弨(1717-1796)이다. 王高郵는 『廣雅疏證』을 엮은 王念孫(1744-1832)인 듯한데, 그의 아들 王引之(1766-1834)도 가학을 이어 『강희자전』의 오류를 교감한 『考證』을 엮은

3) 金正喜, 『阮堂全集』 卷5, 「代權彝齋[敦仁]與汪孟慈[喜孫]」 “校讎之學, 已爲斷航絕港, 鄭漁仲通志諸略中, 特著校讎之一門, 是另具隻眼者. 元明以來, 未聞此學. 近日如錢竹汀王禮堂, 皆其選也. 盧學士王高郵之書, 亦有東來, 至於十三經校勘記, 是又集大成也. 今欲讀經, 舍此何以哉.”

바 있어 부자가 ‘高郵二王’으로 병칭되었다고 한다. 『십삼경교감기』는 阮元(1764-1849)의 저술이다. 모두 완당보다는 한두 세대 이르게 건륭 연간 전반기부터 활동하던 인물들이다.

이 시기에 이르면 청대의 학술 조류가 매우 신속하게 국내로 유입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국내의 지식인들에게도 교감이 하나의 학적 대상으로 분명하게 인식되었다. 완당의 언급에서도 이미 그런 분위기를 짐작해볼 수 있거니와 그 이전에도 국왕 정조가 徐滢修와 尹光顏에게 명하여 『大學類義』를 교감하게 한 뒤에 교감 기록을 모아 직접 정리하고 평설을 붙여 『類義評例』를 저술한 바 있다. 정약용(1762-1836)도 『尙書古訓』 등의 저술을 통해 교감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소박한 형식이나 교감이 실재하였던 것은 벌써 오래전부터이다. 고려 때에 이미 국가 주도로 교감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고려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 또한 조선 초에 편찬된 『고려사』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세종이 변계량 등을 시켜 바로잡도록 했는데, 이 새로운 본을 『讎校高麗史』 또는 『校讐高麗史』라고 일컫고 있다.⁵⁾ 이것이 그대로 출간되지는 못했지만 당시에 이미 교수, 교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음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讎校’ 또는 ‘校讐’라는 명칭 자체가 이미 이를 중요한 학술 행위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선 전기에는 강학에 필요한 주요 고전을 대상으로 주석과 언해를 확정하여 편찬 출간하는 작업이 국왕과 관각의 학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행해졌다. 특히 세종을 비롯한 문종, 세조, 성종 등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때는 주로 해석의 측면에서 자구의 풀이와 문맥의 파악

4) 『高麗史』卷99, 「崔惟清[詵]」 “判秘書省事與吏部尙書鄭國儉等, 讎校增續資治通鑑, 又刊正太平御覽.”

5) 『東文選』卷93, 「進讎校高麗史序」; 『靑莊館全書』卷54, 「盎葉記一·東國史」, “校讐高麗史. 我英廟以鄭道傳等所撰高麗史, 元宗以上有所追改, 似失其眞, 命柳觀卞季良, 更取元宗以上實錄, 比較新史. 如改宗爲王, 節日爲生日, 太后曰太妣, 太子曰世子之類, 復從當時舊史.”

을 증시하였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자구의 대조와 같은 교감학적 작업 요소들도 포함되었고 그 결과들이 출간본에 적극 반영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조선 중기 퇴계 이황과 그 문도들이 『주자서절요』를 엮기 위해 수행했던 교감 작업의 모습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정조와 각신들이 『大學類義』를 엮기 위해 수행했던 교감 작업의 실무 기록을 모아 엮은 『類義評例』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순종대왕실록』을 엮기 위해 수행했던 작업의 과정을 기록한 보고서 형식의 『순종대왕실록의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기록을 통해 조선 시대의 조정과 학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교감 작업의 대강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퇴계의 교감서 『주자서절요』

퇴계는 그 문도들과의 집체 작업으로 문헌의 교감과 훈고에 많은 성과를 남겼다. 특히 『주자대전』을 정리하여 『주자서절요』를 편찬했던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자대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목과 별지가 교환되었고 이를 통해 교감 작업에 관해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⁶⁾

『연보』의 ‘丙辰’년 6월조에 ‘編次朱子書節要成’이란 기록이 있고, 같은 해 12월조에는 ‘序朱子書節要’라는 기록이 있다. 『주자서절요』의 초본이 이때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해는 명종 11년(1556)이다. 다만 통행본에 붙여진 서문에는 서문을 작성한 시기가 무오년(1558) 4월로 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퇴계의 「朱子書節要序」에는 이때 14권 7책의 『주자서절요』가 완성되었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 黃俊良에 의해 1561년에 최초로 성주에서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는데 이때는 8책으로 바뀌었다.⁷⁾ 이

6) 신영주, 「문목과 별지를 활용한 퇴계와 그 문도들의 고전 연구」, 『한문교육 연구』 29,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

7) 유병태, 「퇴계의 저서와 그 간행-『주자서절요』를 중심으로」, 『한국의철학』

후로도 보완을 거쳐 柳仲郢에 의해 1611년 8월에 全州府에서 20권 10책으로 중간됨으로써 그 정형이 완성되었다.⁸⁾

전에 海州에서 간행한 『朱書』를 얻어 근래 한창 校讎하여 일곱 번째 책에까지 이르렀는데 착오가 매우 많습니다. 모두 보이는 대로 修改했으며 修改한 곳에는 모두 標識를 붙여두어 이 본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표지를 찾아 개정하기 쉽게 했습니다.⁹⁾

이는 柳仲郢이 1564년에 다시 海州에서 간행한 『주자서절요』를 받아본 퇴계가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처음 초본이 완성된 이후 학인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는데, 퇴계는 이 책을 보완하기 위해 한 시도 마음을 놓지 않았다.¹⁰⁾

퇴계가 『주자대전』을 처음 접한 때가 1543년이니, 『주자서절요』의 초본을 완성하기까지 14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그 사이 퇴계는 문도들과 『주자대전』을 연구하는 일에 심취했고 초본이 완성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토론을 거듭했다. 황준량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사에서 퇴계는 ‘『朱書』를 매번 사람들과 함께 읽었네’¹¹⁾라고 술회하고 있다. 이들이 주로 논의했던 사항은 오탈자 및 내용 오류의 고증, 문맥의 이해 따위였는데 도출된 결론은 『주자서절요』의 편찬에 적극 반영했다. 이런 정황은 아래의 글

7, 경북대 퇴계연구소, 1979, p.99.

8) 이상하, 「주자서절요 해제」, 『주자서절요』,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9) 李滉, 『退溪集』 卷37, 「答柳希范丙寅」 “前得海州印本朱書, 近方校讎, 到第七冊, 誤錯殊多, 皆隨手修改. 其修改處, 皆有標識, 庶使他有此本者, 尋標改正, 可易施手也.”

10) 李滉, 『退溪集』 卷20, 「與黃仲舉」 “然猶誤闕如此, 則所印朱書, 卷帙許多, 勢難趁日所印, 一煩精鑑點勘, 其多脫誤可知. 愚意寧遲數月, 必須得士人曉事忠實者, 再三校過, 十分精補, 使無太疎漏處. 若苦無可任人, 取其一件并元本, 送來于此, 讎校付標回納, 因以竝改諸件, 何如?”(1561년 5월); 李滉, 『退溪集』 卷11, 「答李仲久[癸亥]」 “節要書疑語, 錄在別紙, 未知如此看, 不至差卻本意否. 有誤, 亦望批誨, 切祝.”

11) 李滉, 『退溪集』 卷3, 「黃星州仲舉挽詞」 “朱書每與人同讀.”

에서도 확인된다.

㉠ 아래 글의 ‘三公’은 원본에 ‘三公’이지만 『절요』에는 ‘二公’인데 무엇이 옳습니까?

‘二公’은 國材와 元聘을 이룰 뿐입니다. 위 글의 ‘子韶’는 張九成을 이르는데 장구성은 한 때의 사람이 아니니 아울러 ‘三公’으로 칭할 수 없습니다.

㉡ 「答蔡季通書」의 ‘鴈鷲’는 『절요』에 ‘鷗鷲’로 쓰였는데 무엇이 옳습니까?

‘鷗鷲’ 두 자를 묶어 말로 쓴 적은 예전부터 없었고 鳳凰과 대로 쓰기에도 더욱 어의가 이어지지 않으니 ‘鷗鷲’의 오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 「答熊夢兆」의 ‘兆’자가 『절요』에 없는데 어째서입니까?

다른 본의 『절요』에는 이미 ‘兆’자가 있습니다. 없는 본은 개정하지 않은 본입니다.¹²⁾

이는 朴光前(1526-1597)이 이미 출간된 『주자서절요』의 본문에서 의심나는 부분을 묻고 퇴계가 답한 내용이다. 퇴계가 답변하는 글을 보낸 때는 갑자년(1564) 8월이었다.¹³⁾ ㉠은 원본에 ‘三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황에 근거하여 ‘二公’으로 바로잡았음을 보여주며, ㉡는 원본에 ‘鷗鷲’로 되어 있는 것을 문맥에 근거하여 ‘鷗鷲’로 바로잡았음을 보여준다. ㉢은 『주자서절요』가 수정 보완되는 가운데 수시로 전사되었기 때문에 미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었음을 보여주는데, 거꾸로

12) 朴光前, 『竹川集』 卷3, 「上退溪先生問目[朱子書節要疑義]」 “下文三公, 元本作三公, 節要作二公, 未知孰是. 作二公者, 是即國材元聘耳. 上文子韶, 當是張九成, 張非一時人, 不應竝指爲三公也. ……答蔡季通書鷗鷲, 節要作鷗鷲, 未知孰是. 鷗鷲二字, 古無相配爲言者. 又以對鳳凰, 語意尤不倫, 可知是鷗鷲字之訛也. 故改正之耳. ……答熊夢兆, 節要無兆字, 何也. 節要他本, 已有兆字. 其無者, 未改之本也.”

13) 정석태는 본 문목이 계묘교정본 『퇴계집』을 기준으로 바로 앞에 수록되어 있는 「答李仲久」와 한 때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했으며, 정초본 『퇴계집』에 이 서간의 표제가 ‘答李仲久[甲子八月]’로 되어 있음에 근거하여 1564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정석태의 『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 퇴계학연구원, 2005. 참조.

계속해서 보완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이때 퇴계는 편장의 체제를 통일하기 위해서도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 바로 작업 지침으로서의 ‘범례’를 이른다. 범례는 작업의 효율을 위해 작성하는 규정집이다.

㉔ 서명은 ‘晦菴書節要卷之幾’로 표기한다.

㉕ 모든 제목은 저삼자로 쓴다.

㉖ 제자의 問辭는 본서에 저일자로 되어 있으니 지금 이 예를 따름이 마땅하다.

㉗ 서간에 答書와 興書가 있는데 본서에서는 答書와 興書를 구분하지 않고 각 편에 모두 제목을 붙였다. 이제 그럴 필요 없이 한 사람에게 쓴 答書면 여러 편이더라도 한 제목으로 연결시켜서 쓰고 興書도 그렇게 한다.

㉘ 한 권은 대략 4, 50장쯤으로 멈추고, 두 권씩을 한 책으로 만든다.

㉙ 抄節貼紙가 청색, 홍색, 황색으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세 차례 살펴보면서 사용한 종이 가 우연히 달랐을 뿐이다. 다른 뜻은 없다.¹⁴⁾

이 범례는 본래 제목이 「書朱子大全凡例」로 되어 있지만 「書朱子書節要凡例」로 되어야 마땅하다.¹⁵⁾ 여기에는 서명의 표기, 제목의 높낮이, 答書와 興書의 구별, 권과 책의 분량, 貼紙의 사용 문제 등 주로 편집에서 논란이 될 만한 점들에 대한 원칙이 기록되어 있다. 위의 경우는 편장의

14) 李滉, 『退溪全書遺集外篇』, 「書朱子大全凡例」 “一, 書名曰晦菴書節要卷之幾. 一, 凡題低三字書. 一, 弟子問辭, 本書低一字, 今當依此例. 一, 書有答有興, 本書則不問答與興, 每篇皆有題. 今則不須如此. 苟答一人, 雖累篇, 同系一題而書, 其於與書亦然. ……一, 每卷約至四五十張許而止, 每二卷作一冊. 一, 抄節貼紙有青紅黃色不同者, 只是三次看詳, 所用紙偶不同耳, 非有他意.”

15) 번담본 『퇴계전서』에도 ‘大全二字恐當作節要’라는 두주가 달려 있고, 상계본 『퇴계전서』에도 ‘大全二字恐當作節要’라는 추기가 달려 있어 이것이 본래 『주자서절요』에 적용된 범례였음이 밝혀져 있다. 또 위의 ㉔에서 서명을 ‘晦菴書節要’로 표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초기의 星州本(1561년), 海州本(1564년), 平壤本(1564~7년)의 경우는 그러했지만 定州本(1561년)을 비롯한 이후의 다른 본들은 ‘朱子書節要’로 이름을 바꾸어 표기하게 되었다. 퇴계도 『退溪集續集』 卷6, 「答柳希范而見」에서 “其題目, 改晦菴曰朱子書者, 亦後來所欲更定者如此. 已於家藏印本, 逐卷皆改作此二字.”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체제에 국한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범례에 교감 작업에 관한 다양한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작업들은 기존에 국내에 전해오던 교감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지만 『주자서절요』의 경우 기존의 다른 관찬 서적의 경우와는 달리 순수한 학술적 동기에 의한 집체 작업에 의해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학술사적 의의를 갖는다. 특히 이들이 문목과 별지를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해소하고 능률을 높인 집체 작업의 선구적 시스템을 학계에 제시해줌으로써 이후 학인들에게 교감 작업의 전범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비평적 교감 기록서 『類義評例』

조선 후기에 이르면 학인들의 저술이 크게 증가하고 출판되는 서적의 수도 많아진 만큼 교감에 대한 관심과 수준도 높아졌다.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퇴계의 경우는 가장 전통적인 교감 작업의 선례를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정조가 남긴 『類義評例』는 교감 작업의 수준을 더욱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단계로 끌어올렸음을 보여준다.

정조는 徐澐修와 尹光顏 등에게 명하여 주희의 『大學章句』에 眞德秀의 『大學衍義』와 丘濬의 『大學衍義補』를 통합하여 『大學類義』라는 책을 엮도록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교감 작업의 실무적 내용을 정리하여 따로 『類義評例』라는 저술을 남겼다. 이는 『弘齋全書』의 권 127과 권 128에 수록되어 있는데, 교감에 대한 당시의 관심과 수준을 잘 보여준다. 정조는 이와 관련하여 『羣書標記』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評例는 논정하고 편집하는 義例이다. 徐澐修와 尹光顏에게 명하여 『大學類義』를 再校할 때, 첨삭한 부분에 각각 종이로 표지를 붙여 자신의 의견을 올리게 하였다. 이를 내가 다시 직접 옆에 표지를 붙여서 하나하나 취사한 이유를 쓰되

마치 문답하는 것처럼 하였다. 며칠간 밤낮으로 작업하여 책이 완성되었다. 모두 수백여 항목을 기록하여 2편으로 엮었다. 短語·零句라서 체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原書에서 산절하여 기록한 의례를 이것에서 알 수 있으므로 『類義評例』라고 한다.¹⁶⁾

이 『유의평례』가 여러 신하들이 『대학유의』를 편찬하면서 실무적으로 불거졌던 여러 문제들에 관해 함께 토론하고 교감한 내용을 모아둔 것임을 알 수 있다. 교감기의 집록이라 할 수 있는데, 교감 실무에서 생산된 기록을 독립 저술로 남긴 최초의 경우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光顏의 籤 : 例를 보건대 제목을 저일자로 써야 할 듯합니다.

滌修의 籤 : 이는 하교하신 범례를 따른 것으로 尊經卑傳의 뜻에서 나온 것이니 지금 고칠 수 없습니다.

光顏의 籤 : 原編에서 衍義와 衍義補를 모두 저일자로 표제하여 ‘大學’ 2자를 극행으로 표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序編에서 衍義序의 제목을 이미 저이자로 썼으니 章句序의 제목도 저일자로 써야 합니다. 서편에서 저일자로 한 것은, 원편에서 극행으로 하고 그 제목을 원문보다 한 글자씩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御 籤 : 朱夫子의 서문을 극행으로 쓰고 『연의』와 『연의보』의 서문을 저일자로 쓴 것은 尊經卑傳의 뜻을 붙인 것이니 고칠 수 없다. 그러나 제목을 저일자로 쓰는 문제는 尹의 말이 과연 옳다. 그래야 「衍義序」의 제목을 저이자로 쓰는 예와 구별이 있으면서 義例가 가지런해질 수 있다.¹⁷⁾

16) 正祖, 『羣書標記四』, 「類義評例二卷」(『弘齋全書』 卷182), “評例者, 評覽編摩之義例也. 大學類義之命徐滌修尹光顏再校也, 此添彼刪, 各以紙籤, 獻其同異之見. 予復親付旁籤, 一一疏其從違之所以然如答問之爲者, 數晝夜而竟其帙. 凡累百餘籤, 列錄之爲二編. 雖其短語零句, 若無統紀, 原書刪錄之義例, 卽此乎可見. 故名曰類義評例.”

17) 正祖, 『類義評例一』, 「卷首籤-大學章句序」(『弘齋全書』 卷127), “臣光顏籤曰 ‘按例, 此題似當低一字書.’ 臣滌修籤曰 ‘此是奉教之凡例, 而蓋出於尊經卑傳之義, 今不可改.’ 臣光顏籤曰 ‘原編衍義及衍義補, 皆低一字標之, 故大學二字,

이는 『유의평례』의 첫머리에 나오는 기록이다. 「序」의 체제, 곧 글의 성격이나 글쓴이의 선후 존비에 따라 ‘極行’으로 높이기도 하고 ‘低一字’나 ‘低二字’로 낮추기도 하여 서로 구별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尊經卑傳도 결국 행의 높낮이로 구별할 수밖에 없다. 『유의평례』에는 이밖에도 서문의 ‘小註’를 처리하는 문제, 중첩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산절하는 문제,¹⁸⁾ 피회자를 처리하는 문제¹⁹⁾ 등이 주로 논의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교감에서 논의되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 경우는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따로 하나의 저술로 집약해두었다는 차이가 있다. 교감의 작업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이를 문자 기록으로 정리하여 남겨둠으로써 해당 작업 자체의 고유한 지적 재산을 인정받으려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감에 대한 당시 학인들의 자세가 진지한 정도를 넘어 이미 학술의 주요한 행위로 접근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3. 官撰書 교감의 작업 일지 『순종대왕실록의궤』

퇴계의 『주자서절요』와 정조의 『유의평례』는 각각 재야의 학자와 조정의 국왕이 주도한 교감 작업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모두 긴밀한

標於極行. 序編則衍義序之題目, 既低二字書之, 則章句序之題, 亦當低一字書矣. 蓋序編之低一字, 卽原編之極行, 題目視原文各低一字故也.’ 御籤曰 ‘朱夫子序文之極行書, 衍義原補篇序之低一字書者, 蓋寓尊經卑傳之義, 固不可改. 但題目之低一字書, 尹說果然. 如是然後, 與衍義序低二字之例有區別, 而義例亦齊整.’”

- 18) 正祖, 『類義評例一』, 「第二十二卷籤」(『弘齋全書』 卷128), “易乾元亨利貞. 臣光顏籤曰 ‘條下丘說, 似不必載, 刪之而連書下條彖曰於此利貞下, 恐好.’ 御籤曰 ‘三畫四德之爲文字義理之祖宗云者, 極有精神, 不可刪. 欲刪則流行以下刪, 或可.’”
- 19) 正祖, 『類義評例一』, 「第二十二卷籤」(『弘齋全書』 卷128), “張載曰 ‘爲天地立心.’ 臣光顏籤曰 ‘此條張某二字, 似當稱張子.’ 御籤曰 ‘經筵不諱, 不可改之, 由前籤言之.’”

체계 속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 교감 작업의 체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는 실록 편찬의 전 과정을 기록해둔 실록의례를 꼽을 수 있다. 전통 시대의 교감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록청에서 이루어졌던 편찬 작업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본고에서는 하나의 예로 『순종대왕실록의례』를 들어 실록청에서 이루어졌던 교감 작업의 단계와 그 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해본다.

刪 節	1835년(현종1) 윤6월 25일~1년 9월 20일
纂 修	1835년 11월 10일~1836년 7월 8일
校 正	1836년 7월 21일~1838년 윤4월 10일
校 讐	1838년 3월 8일~4년 윤4월 10일
刊 印	1838년 3월 20일~4년 윤4월 10일
封 裹	1838년 윤4월 18일
奉 安	1838년 윤4월 21일
議政府賜酒	1838년 윤4월 27일
洗草宣醴	1838년 윤4월 28일
進 謝 箋	1838년 윤4월 29일

『순종대왕실록의례』는 순조 재위 기간에 기록된 사초를 정리하여 실록을 편찬하는 전 과정을 기록해둔 보고서이다. 이 일은 1835년 5월 10일에 영의정 沈象奎가 담당자를 뽑고 도감을 설치하여 일을 시작할 것을 아뢰었으며,²⁰⁾ 두 달 뒤인 윤6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어 1838년 윤4월에 마무리 되었다. 대략 3년 동안 여러 단계로 일이 진행되었는데 그 전 과정을 기록해둔 덕에 이를 통해 당시 편찬 사업의 윤곽을 대략 확인해 볼 수 있다. 위의 표는 본 도감에서 別工作으로 이루어진 일

20) 『純宗大王實錄儀軌』 “領議政沈象奎所啓, ‘先大王實錄, 今當開局撰輯矣. 總裁官以下諸堂郎, 令政院政官, 牌招開政, 擬望以入, 卽爲始事之地何如.’ 大王大妃殿答曰 ‘依爲之.’”

을 정리해본 것이다.²¹⁾

여기에서 刪節에서 纂修, 校正, 校讐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큰 의미에서 교감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다만 번역의 전단계로서 이루어지는 교감이라면 대개 교정과 교수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산절은 처음에 이본을 조사하고 대본을 확정된 뒤에 정본에 수록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단계까지의 작업을 이른다. 찬수는 수록할 부분을 추려낸 뒤에 편찬 체제에 맞게 다시 배열 편집함으로써 외형적 틀을 갖추는 단계의 작업을 이른다. 교정은 대본과의 대조를 통해 단순 오탃자를 바로잡는 단계의 작업을 이른다. 교수는 단순 오탃자가 아닌 대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본래의 오류를 사실 관계나 명분 의리 관계에 근거한 교증과 안배를 통해 합리적으로 시정하는 단계의 작업을 이른다.

Ⅲ. 교감의 범주와 개별 유형

근대 이전의 교감은 대부분 서적의 출간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수행되었다. 현재의 定本 개념과는 동일하지 않지만 당시로서는 가장 완벽한 정본을 작성하기 위해 그 나름으로 교감의 과정을 필요로 했다. 이때 유일본인 경우라면 덜하겠으나 여러 판본과 기타 연관 자료가 복잡하게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를 통합하는 일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여기에서 여러 판본을 통합하여 하나의 정본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교감이라는 말로 관계지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표점 작업은 근대 이후에야 생겨났으므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1) 『純宗大王實錄儀軌』 “刪節: 乙未閏六月二十五日始役, 同年九月二十日畢. 纂修: 乙未十一月初十日始役, 丙申七月初八日畢. 校正: 丙申七月二十一日始役, 戊戌閏四月初十日畢. 校讐: 戊戌三月初八日始役, 同年閏四月初十日畢. 刊印: 戊戌三月二十日始役, 同年閏四月初十日畢. 封裝: 戊戌閏四月十八日. 奉安: 戊戌閏四月二十一日. 議政府賜酒: 戊戌閏四月二十七日. 遮日巖洗草宣醞: 戊戌閏四月二十八日. 進謝箋: 戊戌閏四月二十九日.”

『순종대왕실록의궤』에서 제시한 별공작의 단계를 예로 들면 산절, 찬수, 교정, 교수가 넓은 의미에서 모두 교감의 범주에 속한다. 이 가운데 산절과 찬수를 하나로 묶어 이야기할 수 있고 교정과 교수를 하나로 묶어 이야기할 수 있을 듯하다. 이에 관한 구체적 유형들은 서적 편찬에 앞서 작성했던 과거의 범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앞에서 소개했던 「주자서절요범례」의 경우는 주로 찬수 단계의 작업 지침을 제시한 것이었다. 또 미암 유희춘(1513-1577)이 주희의 문집과 『주자어류』에 대한 교정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성한 「朱子文集語類校正凡例」은 교정과 교수 단계의 작업 지침에 해당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여러 본을 근거하고 또 다른 책에 산견하는 것을 참고하여 文理와 意義가 보다 나은 것을 택한다.

㉡ 重出한 경우 ‘已見某卷, 此重出.’이라고 표제를 붙인다.

㉢ 말로는 비록 甲의 부류에 해당하지만 그 뜻이 乙의 부류에 해당하는 경우 ‘當歸某類某門’이라고 표제를 붙인다.

㉣ 避諱하여 다른 글자로 바뀌어 있는 것은 주자가 한유의 문집을 考異했던 선례에 따라 본래의 글자로 개정한다. 감히 곧장 개정하지 못하고 ‘某當作某’라는 표제를 붙여두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

㉤ 書肆의 판본 중에 획을 줄인 글자로 되어 있는 경우 모두 온전한 글자로 개정한다.

㉥ 疊語를 쓰는 방법은 주자의 手跡에 준하여 개정한다. 예컨대 ‘幸甚幸甚’을 중국인들이 이따금 ‘幸幸甚甚’으로 기록해놓은 경우가 있다.

㉦ 未穩한 글자이지만 달리 고증할 길이 없으면 개정하지 않고 ‘某恐當作某’, ‘疑當作某’라고 표제를 붙여두기만 한다. 또 어떤 글자가 적당할지 알 수 없는 경우는 ‘誤’라고만 표시해둔다.²²⁾

22) 柳希春, 『眉巖集』卷3, 「朱子文集語類校正凡例」 “一, 文集語類, 今據數本, 又文語散見他書者, 參互考訂, 擇其文理意義之長者而從之. 一, 文集語類中重出者, 標題云已見某卷, 此重出. 一, 語類中辭語雖涉甲類, 而主意當歸乙類者, 今標題云當歸某類某門. 一, 避諱代書之字, 今依文公韓文考異例, 從實改正. 其中亦有不敢直改, 而只標題云某當作某. 蓋慎字乃孝宗之諱, 而在高宗時所作, 直用慎字. 其在孝宗以後所作, 以謹代之. 光宗之惇, 寧宗之擴, 亦皆倣此. 若引

유희춘이 이 작업을 수행할 당시에는 주희의 저술이 이미 국내에 유입되어 간행되어 있었다. 『주자대전』과 『주자어류』 등이 중종 13년(1516)에 金安國(1478-1543)에 의해 처음 수입되었으며, 중종 38년(1543)에 교서관에서 을해자로 처음으로 간행되었다. 유희춘은 이 초간본과 다른 본을 함께 대조하고 다른 문헌에 보이는 주희의 기록들까지 아울러 대조한 뒤에 이를 근거로 새로운 본을 완성하였다. 유희춘이 3년에 걸쳐 이 작업을 수행하고 위의 범례를 작성한 때가 만력 3년(1575)이다. 초간본이 나온 지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교감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퇴계의 선행 작업에 힘입은 바 크다.²³⁾

㉠은 본서를 교감하는 데에 있어 판단의 시각이 되는 대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기록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文理와 意義가 보다 나은 쪽을 택한다는 것이다. 아래에 나열한 여섯 가지 예는 모두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곧 ‘重出한 文辭의 처리’, ‘조목을 分類하는 일’, ‘避諱字의 처리’, ‘省字의 처리’, ‘疊語의 처리’, ‘未穩字의 처리’이다. 이는 물론 본 작업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문제들일 수 있으므로 곧장 다른 경우와 동일시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위에서 언급한 교정과 교수 단계의 작업에 해당하는 주요 지침들임은 분명하다.

이상에서 소개한 여러 경우를 종합해보면 교감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古書用古語, 則存本文而不避諱. 一, 書肆板本從省之字, 如以鄱陽爲番易, 使君爲史君, 竊謂爲切謂, 邈迥爲解后類, 皆從完改正. 一, 疊語寫法, 如幸甚幸甚, 華人往往以幸甚甚寫之, 依文公手跡疊語寫法, 竝改正. 一, 未穩之字, 無他考證, 不敢改正. 只標題云某恐當作某, 疑當作某, 又求其字而不得, 則只云誤.”

- 23) 柳希春, 『眉巖集』 卷3, 「朱子文集語類校正凡例」 “臣伏觀朱子大全語類二書, 浩瀚若海涵地負, 密微若蠶絲牛毛. 人雖欲校正, 莫不以掛一漏萬爲難. 臣以謏聞薄識, 忝在提調校勘之列, 謬當是任, 如蛟負山, 常懷兢悚. 適得李滉所校, 以爲據依. 又得僚屬趙憲之助, 旁稽文語所從出之書, 參以愚臣千慮一得之見, 歷三載而粗成訂, 庶幾仰補聖學乙覽之萬一. 然校書掃塵之喻, 古人所不免. 以臣味陋, 誠不勝慙惶之至. 謹再拜稽首以聞. 萬曆三年六月日, 嘉善大夫工曹參判兼同知經筵成均館春秋館事臣柳希春校進.”

일은 대략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앞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이본을 조사하고 그 계통을 밝혀내어 교감 대본을 확정하는 문제를 가장 먼저 꼽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편장의 구성 및 작품 편차의 확정하고 개별 작품 내의 편집 체제를 확정하는 문제이다. 셋째는 단순 오탈자를 기계적으로 교정하고 내용 형식상의 오류를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바로잡는 문제이다. 끝으로 교감 범례를 작성하는 문제도 따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 이본 조사와 교감 대본의 확정

완벽한 교감을 위해서는 그 시작 단계로서 해당 자료를 수집하여 계통을 조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교감의 기본 대본과 대조 대본을 확정해야 한다.

白沙가 처음 간행한 율곡의 『집주소학』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愼齋 선생이 공주 목사 申侯에게 청하여 백사본을 목판에 번각했지만 인쇄하려는 자가 운집하자 인쇄하는 자가 괴로워하다가 장관각을 태우고 말아 전에 찍은 백여 질만 겨우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선비들의 것은 백사본이 아니면 공주본인데 모두 집주가 두 줄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靑郵[전라도 장성의 靑巖驛]에서 보낸 본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백사본이 祖이고 공주본이 孫이니 이제 개간하려면 차라리 孫을 버리고 祖를 취해야겠습니다. 다만 공주본에 신재가 勘訂한 것이 많으니 이번에 백사본을 쓰더라도 감정한 내용을 반영해야겠습니다. 방금 龍安 현감의 조카가 가져온 본은 백사본입니다. 가져다 써도 괜찮겠습니다.²⁴⁾

24) 宋時烈, 『宋子大全』 卷44, 「答趙禹瑞癸卯四月」 “栗谷集註小學, 當初白沙所印, 今世已稀. 頃年愼齋先生, 請諸公州牧申侯, 飜刻白沙本于木板. 印者雲集, 印手甚苦, 火於藏板之室, 故未前所印, 僅百餘件云矣. 今日士子家所有, 非白沙本, 則即公州本, 而皆雙排集註者也. 今靑郵所上, 未知何本, 而白沙本是祖也, 公是孫也. 今若改刊, 則毋寧捨孫而取祖也. 然公州本, 愼齋頗有勘訂者, 今雖用白沙本, 而其所訂, 則不可不移之於此也. 即見龍安宰姪兒所持, 則是白沙

1663년 4월에 우암 송시열이 趙龜錫이라는 인물에게 보낸 편지이다. 禹瑞는 그의 字이다. 우암이 『집주소학』을 간행하는 작업의 기본 설계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집주소학』은 백사본이 祖에 해당하고 공주본이 孫에 해당하므로 백사본을 근간으로 삼되 공주본의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는 고문헌을 교감하는 중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다.²⁵⁾

이 경우는 그래도 두 가지 본을 통합하는 정도로 마무리되므로 수월한 상황이지만 문단과 학계에서 비중이 있게 다루어지는 저술인 경우라면 그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대개 여러 차례 간행이 이루어지고 복잡한 전사의 과정을 거쳐 수많은 이본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퇴계의 문집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작성했던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등이 거의 남아있는 데다 복잡하게 생산된 사본과 간본들이 혼재되어 있어 그 계통을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모든 이본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선후를 가리고 계통을 세워 기본 대본과 대조 대본을 확정하는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다.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충실한 교감이 이루어질 수 없고 완성도 높은 정본이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다.

2. 편장 구성과 편차 교감

이본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교감 대본이 정해지고 나면 기본 대본을 중심으로 전체의 편제를 확정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각 편 내에서도 작품마다의 작가 고증, 연대 고증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차

本也. 取而用之, 亦無妨耳.”

25) 鄭澈, 『松江集』, 「凡例」 “年譜有新舊二本. 舊卽諸賢之所撰次, 而尤翁之讐定也. 新是念齋公之中年刊行者也. 今此一帙之內, 二本不可兼存. 故以舊本入刊, 而綱則從新, 目則從舊. 至於奉使北關一節, 雖是舊本及誌狀之所無, 而當時諸賢之贈送詩篇, 援證昭哲, 茲因新本添入焉.”

서의 착란을 바로잡아야 하며, 혹 잘못 끼어든 타인의 작품을 가려내야 한다.

이 문집은 홍무 정축년(1397)에 처음 간행되었고 성화 정미년(1487)에 중간되었다. 공의 증손 관찰사 文炯이 발문에서 “옛 판본이 있지만 흩어져 완전치 못하다.”고 했다. 문형 때에도 이런데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야 전하지 않음이 당연하다. 당저 신해년(1791)에 내각에 명하여 공의 유집을 구입해서 간행하기로 했는데 편질이 잔결되어 거의 읽을 수가 없었다. 그 「범례」를 보면 시는 ‘잡영’, ‘금남잡영’, ‘봉사록’으로 분류하고 문은 ‘잡제’, ‘금남잡제’로 항목을 삼았지만 차서가 많이 틀리고 분류가 선명하지 못하다. 이에 표제를 따로 정하되 시는 오언, 칠언으로 하고 문은 疏, 箋, 書 등으로 정하여 각기 유형에 따라 나누었다. 아울러 기년을 따져 선후가 틀리지 않게 하고, 따질 수 없는 경우는 빼놓았다. 구본의 분류를 전부 버릴 수 없으므로 시문의 편제 아래에 ‘아래의 몇 수는 某編이었다.’라고 씀으로써 본래의 면목을 보존한다. 『文鑑』 이하는 모두 완전한 글이므로 한 글자도 이동하지 않고 중첩된 기록만 산삭한다.²⁶⁾

이는 『삼봉집』을 새로 간행하려고 체제를 재편하면서 논의했던 것들이다. 오래 전에 출간된 『삼봉집』의 편질이 잔결되어 그대로는 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시문의 분류와 기년에 따른 편차 조정이 문제가 되었다.

시는 본래 ‘잡영’, ‘금남잡영’, ‘봉사록’ 등으로 묶여 있었지만 본래대로 편집할 여건이 되지 못했다. 결국 시 형식을 기준으로 오언고시, 칠언고시, 오언절구, 육언절구, 칠언절구, 오언율시, 칠언율시 등으로 재편하고 詞와 樂章도 뒤에 덧붙였다. 문의 경우도 본래 ‘잡제’, ‘금남잡제’

26) 鄭道傳, 『三峯集』, 「凡例」 “一. 是集始刊於洪武丁丑, 重刊於成化丁未. 公之曾孫觀察使文炯跋其卷尾曰 ‘舊有板本, 散落不完.’ 在文炯時已如此, 今經屢百載, 宜其不傳也. 當寧辛亥, 命內閣購公遺集將梓行, 編委殘缺, 殆不可讀. 攷其凡例, 則詩以雜詠·錦南雜詠·奉使錄分類, 文以雜題·錦南雜題爲目. 然敘次多錯, 類例不明. 故別立標題, 詩以五七言, 文以疏箋書等目爲例, 各以類從. 竝攷年紀, 先後無紊, 其不可攷者闕之. 舊本類例, 不可全削. 故詩文篇題下, 書以下幾首某編, 以存本來面目. 文鑑以下俱是完書, 故不爲移動一字, 但刪其疊錄.”

등으로 묶여 있었지만 문체를 기준으로 疏, 箋, 書, 啓, 序, 記, 說 등으로 재편했다. 이때 1차 기준은 시문의 형식이었지만 2차 기준은 작품의 창작 연대였기 때문에 개별 작품의 창작 시기를 밝혀 선후를 확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원형을 해체하여 새롭게 재편하더라도 최대한 원형을 보여주 고자 배려했다. 예컨대 재편된 시문의 제목 밑에 ‘아래의 몇 수는 某編이었다.’라는 기록을 붙여두어 원형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또 원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한 글자도 옮기지 않고 중첩된 부분만 산삭하여 최대한 원형을 보존해두었다. 한편 작품 연대를 고증하면서 작가 고증도 함께 병행하여 타인의 작품을 걸러낼 수 있다.²⁷⁾

전체 편장의 구성을 확정하고 작품의 편차를 조정한 뒤에는 개별 작품 내의 편집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여러 대본을 비교하여 각각의 장점을 취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서적의 내용이 가장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일이다.

㉑ 詩의 편제 아래에 있는 小序는 공이 스스로 기록한 것도 있고 후인이 나중에 기록한 것도 있다. 본인의 기록은 제목 밑에 별행의 低一字로 크게 쓰고 후인의 기록은 제목 밑에 夾註로 쓴다.²⁸⁾

㉒ 초본도 章段의 탈결과 자구의 오류가 있고 간본도 그다지 완전하지 못하여 攷正하기 가장 어렵다. 탈결된 것 중에 상고할 수 있는 것은 메워 넣고 상고할 수 없는 것은 구본대로 행의 수를 따져 비워둔다. [『경국전』 가운데 여러 곳에 있으니, 원각이 탈결되어 메우지 못한 경우이다.]²⁹⁾

㉓ 구본의 시문은 고려이든 본조이든 막론하고 존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

27) 鄭道傳, 『三峯集』, 「凡例」 “一. 知密直事成原揆等, 典法判書洪仲原, 祭鄭尙書云敬文載集中, 當刪而姑附于末.”

28) 鄭道傳, 『三峯集』, 「凡例」 “一. 詩篇題下小序, 有公自識, 有後人追識. 自識者, 題下別行低一字大書, 追識者, 卽其題下夾註書.”

29) 鄭道傳, 『三峯集』, 「凡例」 “一. 抄本章段脫缺字句訛謬, 刊本亦頗不完, 最難攷正. 其脫缺之可考者填補, 不可考者依舊本計行數空之. [經國典中數處有之, 而原刻脫缺不填者.]”

두 極行으로 써서 한 줄에 혹 2, 3자도 되지 않는 곳이 있어 간략하게 편찬하려는 체제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고려에 관한 일은 모두 이어서 쓰고 본조에 관한 일은 모두 隔一字로 한다.³⁰⁾

개별 작품 내의 체제 조정이 쉽게 주관적 안목으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여러 이본을 대조하여 최선의 형식을 도출해내어야 마땅하다. ㉠은 제목 밑에 붙어 있는 小序의 형식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은 본문 안에서 章段이 탈락된 부분을 효과적으로 구현해내는 문제인데, 『삼봉집』의 경우 확인 가능한 부분은 개정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빠진 글자 수만큼 그대로 비워둠을 원칙으로 삼았다. ㉢은 極行과 隔一字의 처리 문제이다. 또한 위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목을 확정하는 일도 중요한 문제였던 듯하다. 다수의 이본이 존재하는 경우 서로 달리 되어 있는 제목을 합리적으로 통합해내는 일이다. 특히 필사본인 경우 사적 첨삭이 끼어들기 쉬운 부분이 제목인데 이본이 많다면 이를 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3. 오탈자 교정 및 내용 오류의 교감

일반적인 경우에 교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오탈자 교정이다. 동시에 未穩字, 衍文, 避諱字 등의 처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본 대본과 대조 대본의 상호 대조를 통해 양쪽의 차이점을 밝혀내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근거로 단순 교정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감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최선의 것을 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어느 쪽이든 단순 오류가 아니라면 개정한 이후에 범례에 준한 교감 기록을 붙여두어야 한다. 略字, 通假字, 異體字 등 서로

30) 鄭道傳, 『三峯集』, 「凡例」 “一. 舊本詩文, 無論勝國本朝, 凡於所尊敬處, 皆極行書之, 一行或不滿二三字, 有乖簡編之體段. 故事係勝國者皆連書, 關本朝者皆隔一字.”

통용되는 글자끼리 별다른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바꾸어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한자 표기의 특성상 굳이 교감 기록을 붙이지 않고 곧장 개정하는 편이 더 합리적인 경우도 있지만 단순 오류라도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감 기록을 붙여두어야 마땅하다. 다만 오류로 판단되더라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대로 원형을 유지해 둔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교감자의 의견을 붙여두어 추후의 개정에 대비해야 한다.

㉠ 분명한 落字·‘無極’의 주 ‘一陽初動’의 아래에 ‘處’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은 따위·이거나 혹 誤字·‘無極’조의 ‘天地萬物’의 ‘地’자를 잘못하여 ‘下’자로 쓴 것 같은 따위·이거나 본래 없던 글자·‘無極’조의 ‘太極而’의 ‘而’자를 잘못 붙여 넣은 것 같은 따위나 또는 본조의 ‘先生作’ 같은 따위· 이는 다시 상량해보아야 함· 인 경우에는 곧장 개정하여 본래의 문장에 맞춘다.³¹⁾

㉡ 의심이 없는 오류는 정리하여 개정하고 자구가 서로 다른 경우는 ‘某本作某字’라고 쓰고 문집 중에 피휘한 글자는 -예컨대 ‘元’자를 高皇帝의 휘를 피하기 위해 ‘原’으로 대신한 따위이다.- 모두 그대로 둔다.³²⁾

㉢ 抄本에 사이사이 탈자, 오자가 많지만 메워 넣을 근거가 없다면 ‘缺’자를 써둔다. 자구가 통하지 않지만 또한 상고하여 개정할 근거가 없다면 우선 원본대로 두어 闕疑한다.³³⁾

㉠의 경우처럼 분명한 落字이거나 분명한 誤字이거나 본래 없던 글자가 추가되어 있다면 곧장 개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용례가 다수 발견되거나 일정한 규칙에 따라 변형되어 있다면 범례에서 이를 밝힐 수

31) 朴世采, 『南溪集』 卷65, 「近思錄釋疑考正凡例(庚子)」 “分明落字[如無極註一陽初動下, 落處字之類]誤字[如無極條天地萬物之地, 誤作下之類]及本無字[如無極條太極而之而誤添之類. 又如本條先生作之類, 此則宜更商量.], 則當直改以從本文.”

32) 鄭道傳, 『三峯集』, 「凡例」 “訛謬之無疑者釐改, 字句互異者書某本作某字. 集中諱避之字, [如元字避高皇帝諱, 代以原之類] 皆仍之.”

33) 梁誠之, 『訥齋集』, 「凡例」 “抄本, 間多脫誤. 填補靡稽, 則輒書缺字. 字句之不可通解者, 亦無以考正, 姑從原本, 以存闕疑.”

있다. ㉔의 경우처럼 오류로서 의심이 없다면 개정하되 ‘某本作某字’의 형식으로 字句의 차이점을 밝혀두어야 한다. 그밖에도 필요한 경우는 그때그때 교감 기록을 붙여둔다. 예컨대 ㉕의 경우처럼 오탈자를 개정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억지로 고치려다 개악하기보다는 ‘缺’자를 써 두어 미완의 상태로 두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또 원작자의 뜻을 존중하여 원형을 그대로 둘 수도 있다.³⁴⁾

오탈자를 바로잡는 일과 더불어 교감에서 핵심이 되는 일은 내용의 오류를 시정하는 일이다. 오탈자는 원작자 또는 필사자, 판각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내용 오류는 그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때로는 원작자의 잘못된 시각으로 말미암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는 ㉕의 경우처럼 자구가 통하지 않더라도 개정할 근거가 부족하면 원형을 보존해두고 오류를 지적하는 정도로 闕疑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㉖ 潭谷의 수차 가운데 잘못 이해한 것임이 분명하면 곧장 개정한다. 혹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담곡의 수차에 운운하였다.’라고 쓴 뒤에 권점을 달아愚見을 덧붙인다. 혹 미진한 뜻이 있을 때에도 권점을 달아 보태어 넣는다.³⁵⁾

㉗ 문자의 인용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모두 ‘當考’라고 쓰거나 혹 ‘未詳’이라고 써두었다가 확인되는 대로 보완한다.³⁶⁾

이는 『宋子大全隨笱』를 1867년에 처음 목활자로 간행하면서 작성했던 「범례」이다. 「범례」의 끝에 송시열의 8대손 宋近洙가 1866년에 작성한

34) 許穆, 『記言』, [凡例] “一. 先生平生著述甚多, 而記言所錄厘十之三四. 其間篇章, 或有重出者, 或有疏略者. …… 此蓋先生未成之書, 而今不敢妄加增刪者, 以曾經先生手錄故也. 覽者詳之.”

35) 宋時烈, 『宋子大全隨笱』, 「凡例」 “潭谷所笱中, 明知其誤解者, 直改之. 或有可疑者, 書以潭谷隨笱曰云云而圈之, 附以愚見. 又或有未盡之意, 亦以圈之而添入.”

36) 宋時烈, 『宋子大全隨笱』, 「凡例」, “文字引用出處未及考者, 皆曰當考, 或曰未詳, 以俟隨得隨補.”

기록이 붙어 있다. 여기에 교감의 몇 가지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오류가 분명하면 곧장 개정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상황에 따라 교감자의 의견을 적절히 밝혀둔다고 한다. 이는 원작자가 기술한 내용의 오류를 밝히는 작업에 해당한다. 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인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當考’나 ‘未詳’ 등의 기록을 붙여두어 추후의 보완에 대비하고자 했다. 무책임하게 고증을 게을리 하고서 ‘缺’, ‘當考’, ‘未詳’ 등의 주를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분명한 논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경우 이런 방식의 개방적 각주를 작성해두는 것이 후속 작업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과학적인 방법이 되리라는 생각이다. 대본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의 성격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4. 교감 범례의 작성

교감 작업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범례의 작성이다. 앞의 여러 용례에서 확인했듯이 범례는 작업의 큰 지침을 정해둔 규정집이다. 대본의 성격에 따라 유념할 부분이 달라 범례 역시 경우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작업의 혼선을 피하고 효율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먼저 범례가 작성되어야 했다. 그런데 현재의 입장에서도 어떤 서적을 정리하고 번역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해당 범례는 검토해야 한다.³⁷⁾ 범례의 내용을 살펴야 해당 고전의 특성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정리 번역에서 발생할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례가 국내에서 언제부터 작성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양촌 권근(1352-1409)은 「三國史略序」에서 김부식(1075-1151)의 『삼국사기』를 평하면서 “筆削의 凡例가 완전히 합당하지는 못하다.”³⁸⁾고 하

37) 正祖, 『經史講義』, 「綱目·總論」(『弘齋全書』卷100), “先儒云孔子作春秋, 其魯史舊文筆削之迹, 後世無由考論者, 以其無凡例也. 而朱子綱目則凡例一篇, 幸出於趙訥齋之家, 當時去取之微旨, 今猶可彷彿.”

여 범례를 언급한 바 있다. 세종도 계묘년(1423)에 유관과 윤희에게 명하여 정도전(1342-1398)이 찬수한 『고려사』의 기존 범례를 개정하도록 한 바 있다.³⁹⁾ 『삼국사기』는 1145년에 완성되었고 『고려사』는 태조 4년(1395)에 편년체로 찬수되었는데⁴⁰⁾ 이때의 범례는 후기의 범례처럼 별도의 기록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紀, 傳, 志, 表 등의 구분, 年紀의 표기, 官號의 표기, 制와 勅의 표기, 宗과 王의 표기, 廟號와 諡號의 표기 등의 원칙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편찬의 원칙으로서의 범례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문화된 범례는 후대의 저술에서 확인된다. 김종서와 정인지 등이 참여하여 1452년에 완성한 『고려사절요』에는 4가지 항목의 「범례」가 붙어 있다. 여기에는 編次의 기준, 宗과 陛下와 太子 따위의 칭호, 朝會와 祭祀의 기록, 사신 왕래와 災異의 기록, 辛禱에 관한 기록 등에 대한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이후로는 서적 편찬을 위해 미리 범례를 작성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범례는 해당 서적의 편찬 원칙을 선언하는 성격을 갖는데,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러 범례들을 참고하여 현실에 적합한 조목들을 골라내었다.⁴¹⁾ 그런데 대본간의 교감을 거쳐 최종의 정본을 작성하기

38) 權近, 『陽村集』 卷19, 「三國史略序」 “前朝文臣金富軾, 輯而修之爲三國史. 乃倣遷史, 國別爲書, 有本紀有列傳有志有表. 凡五十卷, 以一歲而分紀, 以一事而再書. 方言俚語, 未能盡革, 筆削凡例, 未盡合宜.”

39) 鄭道傳, 『三峯集』 卷14, 「附錄事實」 “世宗癸卯, 命柳觀尹淮, 改修公所定高麗史凡例. ……史官李先齊等曰 ‘官號雖僭, 皆當時之制. 稱制稱勅, 亦不可沒實. 雖曰正名分, 當與春秋郊禘大雩, 同垂以爲鑑戒. 何可更改.’ 季良不以爲然, 淮以啓. 上曰 ‘……其改宗稱王, 可從實錄, 廟號諡號, 不沒其實. 凡例所改, 以此爲準. 乃命觀, 淮悉從舊史.’”

40) 『世宗實錄』 6년(1424) 8월 11일, “進讞校高麗史, 其序文曰 ‘恭惟我太祖開國之初, 卽命奉化伯鄭道傳西原君鄭摠, 修高麗國史. ……倣左氏編年之體, 三年而成爲卷三十有七. 顧其書, 頗有舛誤. 至於凡例, 以元宗以上事多僭擬, 往往有所追改者.’”

41) 宋時烈, 『宋子大全』, 「凡例」 “一. 舊本實倣南軒集凡例, 第二書以下, 皆書以又字, 而終有不便於攷閱. 今從朱子大全例, 每書書以與某答某.” 『後溪集』 권9 「

까지의 작업의 원칙으로서 이 범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편찬 범례라 일컬을 수도 있고 교감 범례라 일컬을 수도 있다. 교감과 편찬의 원칙으로서 범례가 큰 역할을 해왔으므로 전통시대의 고전을 정리하고 번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전통 시대의 교감 활동에 관해 알아보았다. 전통 시대의 학인들에게 교감은 매우 중요한 학술 행위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완벽한 교감을 위해 오랜 시간을 쏟았을 뿐 아니라 많은 인원의 힘을 모았는데, 교감을 수행하면서 객관적 사실 관계를 기준으로 삼기도 했지만 의리와 명분 관계를 기준으로 삼기도 했다. 해당 시기의 세태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때에 출간된 서적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안목으로만 개정 재편하여 정본을 작성한다거나 역주를 작성한다면 도리어 개악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서적의 범례는 우리에게 상당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범례는 서적을 간행할 당시의 특이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입장에서는 이를 활용함으로써 작업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인문 학술에서 교감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연구와 저술의 1차 자료일 뿐 아니라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갖는 고전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확한 교감이 절실하기만 하다. 교감 작업 없이는 훌륭한 정본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결과물도 생산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원본 자체에

晚湖處士公遺事」, “若其紹述之迹, 則嘗節約先集中書札, 凡例圈批, 一依朱子書節要, 而未及卒業, 手筆二冊在.”

‘미완의 상태’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현재의 안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원본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현재의 여건으로 미완의 상태나 미지의 상태를 해소할 수 없다면 미완과 미지의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더 과학적일 수 있다. 다만 추후 작업을 위해 반드시 교감기록을 붙여 원형의 모습과 새로 바뀐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밝혀야 마땅하다.

본 논의를 더욱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향후에 전통 시대의 서적 편찬 과정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校書館의 존재 및 檢書官의 역할에 대한 검토와 『실록』 찬수를 비롯한 역대 왕조의 서적 편찬 사업에 대한 검토가 아울러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선인들의 교감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이를 수 있으며, 현재의 교감 사업에 대한 주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⁴²⁾

<參考 文獻>

- 金宗瑞 등 편, 『高麗史』
『國朝寶鑑』
徐居正 등 편, 『東文選』
實錄廳, 『世宗實錄』
儀軌廳, 『純宗大王實錄儀軌』
權近, 『陽村集』, 『韓國文集叢刊』007, 한국고전번역원.
金正喜, 『阮堂全集』, 『韓國文集叢刊』301, 한국고전번역원.
朴光前, 『竹川集』, 『韓國文集叢刊』039, 한국고전번역원.
朴世采, 『南溪集』, 『韓國文集叢刊』138-142, 한국고전번역원.
宋時烈, 『宋子大全』, 『韓國文集叢刊』108-116, 한국고전번역원.

42) 『國朝寶鑑』, 「凡例」 “宣廟寶鑑, 凡於字句傳寫之誤, 顯然易知者, 皆有註釋. 如羈的之的, 註之曰實錄作鞞; 如圖合之圖, 註之曰實錄作圍. 若此類甚多, 徒眩觀覽. 故今直據註釋, 一一釐正, 而註釋則並省去.”

- 梁誠之, 『訥齋集』, 『韓國文集叢刊』009, 한국고전번역원.
柳希春, 『眉巖集』, 『韓國文集叢刊』034, 한국고전번역원.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한국고전번역원.
李滉, 『退溪全書』(陶山全書), 퇴계학연구원, 1988.
—, 『退溪集』, 『韓國文集叢刊』029-031, 한국고전번역원.
鄭道傳, 『三峯集』, 『韓國文集叢刊』005, 한국고전번역원.
正祖, 『弘齋全書』, 『韓國文集叢刊』262-267, 한국고전번역원.
鄭澈, 『松江集』, 『韓國文集叢刊』046, 한국고전번역원.
許穆, 『記言』, 『韓國文集叢刊』098-099, 한국고전번역원.
- 신영주, 「문목과 별지를 활용한 퇴계와 그 문도들의 고전 연구」, 『한문교육 연구』 29,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
유병태, 「퇴계의 저서와 그 간행-『주자서절요』를 중심으로」, 『한국의철학』 7, 경북대 퇴계연구소, 1979.
이상하, 「주자서절요 해제」, 『주자서절요』,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정석태, 『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 퇴계학연구원, 2005.

Abstract

*On the Tradition of Proofreading in Literature in Chinese (Sino-Korean)
Characters and its Type* / Shin Young Ju***

Proofreading is very important in the humane studies. It is classics that exist beside us through the concentration of long-ranged historic experiences and knowledge, and in order to summarize them, it is indispensable to go through the process of proofreading. Proofreading is the basis of the summarization of classics and is like the solidification of the basis of the science.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the summarization of classics, which addresses the need for a methodological review of this. Thus, this study reviewed several cases in hopes of presenting at least a minimum of commitment to the inheritance of the proofreading tradition. First, the study found the long tradition of proofreading that we have has already been inherited as a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 and it looked into the scope of proofreading on a working level and the individual pattern of proofreading.

【Key words】 Proofread, Introductory remarks, Definitive edition,
Ju-ja-seo-jeol-yo, Riu-ui-pyeong-rye

투고일 : 11월 8일, 심사일 : 11월 18일, 게재확정일 : 12월 5일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08”

** Sungshin Women's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 zuowang@hanmail.net